

충청북도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"사무과, 지도부, 자료부, 전시부"를 "지도부·전시부·자료부 및 사무과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,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 연구사로 보한다"를 "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 연구사로 보하고,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"로 한다.
제7조를 제10조로, 제8조를 제7조로, 제9조를 제8조로,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.

부
T

칙
7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